



부산항 항만노무인력 하역회사별 상용화 합의 인력공급체제개편 노·사·정 세부협약서 체결



그동안 항운노조에서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 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로 상시고용체제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식을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영탁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수용 부산항만물류협회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합의를 통해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100년사의 큰 틀을 바꾸는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번 부산항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작업은 지난해 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제정된데 이어 지난 6월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돼 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부산항 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와 실무개편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협상 의제에 대해 노·사·정간에 15차례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부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북항 중앙과 3·4·7-1 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를 개편대상부두로 하고,

이 부두에 근무하는 항운노조원을 하역회사의 정규직으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협약서는 또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함으로써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으로 하고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행대로 반별 순번제와 현 작업장을 유지키로 해 상용화 초기 체제 개편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금 지급기준 조정, 항만현대화기금을 통한 지원, 대체부두 제공 등 상용화 인력의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용화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시 부두임대기간 연장,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서는 개편대상 노조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대상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개편대상 조합원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운영회사별로 고용계약을 체결해 개편대상 항운노조 조합원이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원이 되면 이번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작업은 마무리된다.

한편, 11월17일 부산항3부두 항운노조 지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세부협약서'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부산항은 내년부턴 상용화체제로 전격 전환된다.

이는 부산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130년 만에 종말을 고하는 대신 그동안 부산항운노조에

소속돼 일하던 부두 노동자들의 신분이 부두운영회사 직원으로 바뀌게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조영탁위원장은 상용화 대상인 부산항 북항 중앙과 3, 4, 7-1 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의 항운노조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1,000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77.1%인 771명이 협약서에 찬성함에 따라 협약서안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협약안 통과로 내년부턴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부두는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3, 4, 7-1부두, 감천항 중앙부두 등이다. 이들 부두운영회사들은 희망퇴직자를 뺀 전체 대상자를 직접 상시 고용하고,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상용인력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사항은 개편 이전 수준을 보장받는다.

해경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욱)은 11월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 및 13개 해경서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선박, 해양시설이나 연한 폐기물 발생업체로부터의 오염물질 해양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 사업장 대상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해양시설, 임해 사업장에서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연안에 무단 방출하는 행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부문에 있어 불법행위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각종 해양 건설공사 중 연말 준공이 임박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나 연안 무단방치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함으로 연안 해양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한다.